

전화교환원 53살정년 인정 대법판결 여성계 “성차별” 큰반발

여성이 대부분인 전화교환원의 정년을 다른 직원보다 5년 낮은 53살로 제한한 것은 남녀차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한겨레신문 8월28일치)이 나오자 여성계가 성차별적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회장 이연숙)는 28일 성명을 내 “대법원이 지난 88년 당시 한국전기통신공사 전화교환원이었던 김영희씨의 교환원 정년 성차별 소송에 대해 ‘일반직 55살, 교환원 43살의 정년차는 성차별’이라고 판결했음에도, 8년이 지난 이번 ‘일반직 58살, 교환원 53살’의 5년 정년차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다시 판결을 내린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여협은 또 “12년차는 성차별이고 5년차는 성차별이 아니라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여협은 특히 “차별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을 기준으로 하는 판례를 깨고 경영사정 등 사업주의 이익을 우선시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동화로 인한 잉여인력의 문제는 기

업형태의 변화와 배치전환 등을 통해 조정할 문제이지, 교환원의 정년을 차등적용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공동대표 지은희 한명희)도 이날 ‘여성차별 정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같은 직급 직종에 남성이 없다고 해서 전화교환원의 정년을 일반 직원보다 5년 줄인 것이 남녀차별이 아니라는 논리는 명백한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여연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94년 여성인력을 고용하면서 여성에게 용모제한을 한 대기업을 여성단체들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모집 직종에 남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여여차별이지 남녀차별이 아니라는 성차별적 판결을 내렸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며 주장했다.

여연은 이어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과제를 선정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한 시점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권정숙 기자